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88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95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3

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98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13.

다. 회 부 일 : 2026. 1.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현 행	윤준병의원안
○ 경영실적 평가기준 반영사항 -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 <신 설> -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 된 사항	○ 경영실적 평가기준 반영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포함한 이전지역과의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 -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하여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요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동 법 제29조의3¹⁾에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 성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행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공개한 ‘2025년 지역발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을 완료한 150개 이전공공기관은 2024년에 지역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6개 분야에 총 3,637건, 3조 1,408억원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한 바 있

을 말한다.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①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으며, 2025년에는 6개 분야에 3,046건, 2조 7,980억원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권역별 지역발전 추진 실적/계획]

□ 2024년 추진 실적

지역	기관 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주민지원 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지역우선 구매		기타사업		합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50	395	963,246	528	74,289	1,068	42,796	533	84,744	1,019	1,776,414	114	199,343	3,647	3,140,832

□ 2025년 추진 계획

지역	기관 수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주민지원 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지역우선 구매		기타사업		합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50	342	735,268	442	75,321	910	81,813	398	55,805	867	1,705,078	87	144,674	3,046	2,797,959

그러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추진 현황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의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의무는 있으나, 평가 연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지역발전 성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체계상 법률에는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원칙 및 일반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²⁾,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세부평가지표 등은 시행령³⁾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도 경영평가편람 등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경영실적평가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참여, 지

2)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3)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역경제 활성화 노력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현행법 체계상 경영평가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행법상 경영평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세부평가지표와 내용은 시행령과 평가편람에 위임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는 평가지표의 세부평가 내용 수준으로 편람 반영을 검토할 사항으로, 모든 평가지표를 법률에 규율 시 정책 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생략)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포함한 이전지역과의 상생 협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

참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 ('26년도 평가편람)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계량 2점
	세부평가내용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매실적 * 중소기업제품(0.3), 창업기업제품(0.2), 기술개발제품(0.2),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물(0.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0.3), 여성기업제품(0.2), 장애인생산물(0.4),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물(0.2)
	지표정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배점)	- 공기업(상장, SOC, 에너지) : 비계량 2점, - 공기업(산업진흥·서비스) : 비계량 2.5점 - 준정부기관 : 비계량 1.5점
	세부평가내용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 경제 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및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상생결제 등 동반성장평가 결과(중기부) 반영, 혁신지향 공공조달(창업기업·기술개발제품구매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여부 등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협력사업 발굴 및 판로·금융지원 등 ② 기부·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역공부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인턴십·멘토링·장학금 지원 등 * 지자체·지역기업·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발굴 등 * 지역농산물 등 지역생산물 구매 확대, 지역 및 국제행사 참여,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노력 및 성과 등 ③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알리오플러스 예약 등 이용실적, 이용자 편의, 시설 개방 안내·홍보, 우수 개방시설 운영 등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주차장, 체육시설, 회의실, 강당, 예식장 용도 시설 등